

의안번호	제2658호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 사항	
----------	--

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·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	김원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. 8. 25.

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·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(김원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5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8. 25.

발 의 자: 김원순, 김향숙, 우정욱,  
이쌍자, 최두임, 허옥희,  
이정숙 의원(7인)

### 1. 제정이유

고성군 토종농산물을 보존·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
고성군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고성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  
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토종농산물, 농업, 농업인 등의 용어 정의(안 제2조)

나. 토종농산물의 보존·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 
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지원 대상 결정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 
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

에 관한 법률」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30호

- 예고기간: 2023. 8. 29.(화) ~ 2023. 9. 4.(월) [6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·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토종농산물의 보존·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토종농산물”이란 「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.
2. “농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3. “농업인 등”이란 법 제3조제2호 및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·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종합계획)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·육성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1. 토종농산물 조사·관리·재배 등의 현황

2. 토종농산물 품종 지정에 관한 사항
3. 토종농산물 품종 육성·보존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4. 토종농산물 판매·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 사업)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보존·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1. 토종농산물 채종포·전시포 사업
2. 토종농산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
3.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
4. 토종농산물 보존·육성 추진 민간 단체 지원
5. 기타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지원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지원 대상 결정 등)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

② 지원사업의 신청, 교부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□ 「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**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3. 3. 23., 2015. 6. 22., 2016. 12. 27., 2017. 3. 21.>

5. “농업유전자원”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. 이 중에서 종자·영양체(營養體)·화분(花粉)·세포주·유전자·잡종(蠶種)·종축(種畜)·난자(卵子)·수정란(受精卵)·포자(孢子)·정액(精液)·세균(細菌)·진균(真菌)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.

가. 야생종: 산·들 또는 강(하천·댐·호소·저수지를 포함한다)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

나. 재래종: 한 지역 및 수역(이하 “지역”이라 한다)에서 재배·사육·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·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

**□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**

**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. 20., 2015. 6. 22., 2020. 12. 8.>

1. “농업”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2. “농업인”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**제15조(정책심의회)**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, 시·군 및 자치구에 시·군·구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. <개정 2015. 6. 22.>

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, 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, 그 밖에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6. 22.>

1.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제17조에 따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

3. 그 밖에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**제16조(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)**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·유통·가공·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(이하 “농업생산자단체”라 한다)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(營農組合法人)을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5. 27., 2015. 1. 6., 2015. 6. 22.>

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·유통·가공·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(이하 “어업생산자단체”라 한다)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(營漁組合法人)을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5. 27., 2015. 1. 6., 2015. 6. 22.>

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(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,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8. 17.>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신고,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,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8. 17.>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,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,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1. 8. 17.>

⑥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8. 17.>

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출자,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, 변경신고, 해산신고,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8. 17.>

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민법」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5. 1. 6.>